

좋은간판 지원사업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Signboard Design Guideline

20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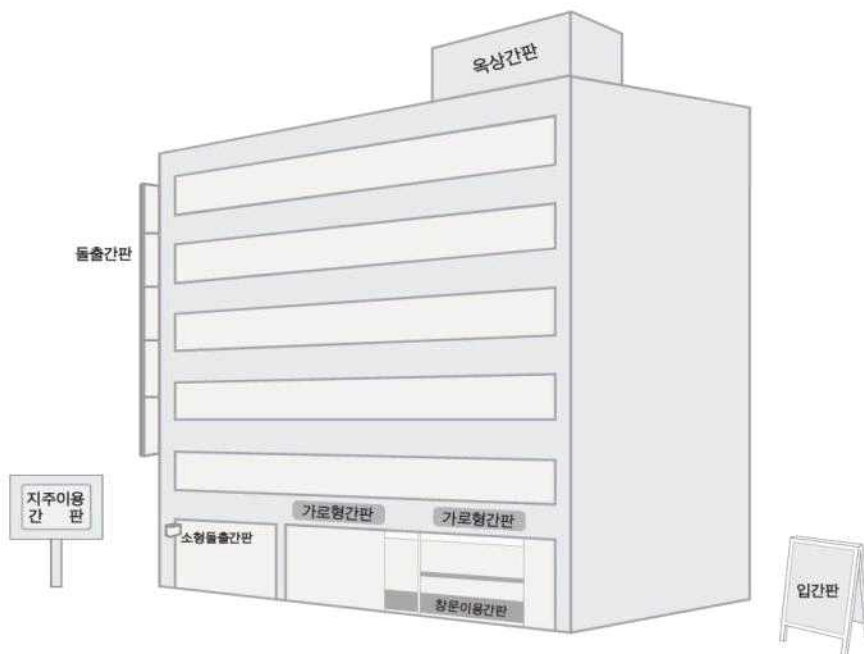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종 류	정 의
벽면이용간판	판이나 입체형으로 건물벽면,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창문이용간판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이나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입간판	벽면에 기대어 놓고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광고물
현수막	벽면, 지주,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전단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대상

종 류	허 가	신 고
벽면이용간판	- 한변 길이 10m 이상 - 4층 이상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1~3층) - 4층 이상
돌출간판	신고대상 외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 아미용업소 표지 등 - 높이 5미터 미만(지면~상단) - 한 면의 면적 1㎡ 미만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 이상(지면~상단)	- 높이 4미터 미만(지면~상단)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입간판		- 모든 입간판
기 타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상업용자동차, 화물차 등) - 네온류·전광류,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 - 면적 30㎡ 초과 현수막 게시시설	- 허가 대상 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전단,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면적 30㎡ 이하 현수막 게시시설

허가 및 신고 배제 대상

-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적용상 주의]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
- 표시 방법 등 위반 시 제재 대상

※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내용은 관련 법 및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함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좋은간판 디자인 원칙

1. 지나치게 크기가 큰 간판은 지양해 주세요.
2. 간판 수량을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표기해주세요.
3. 간결하고 특색있는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4. 그래픽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여 정체성을 표현해 주세요.
5. 강한 컬러 및 지나치게 다양한 색채의 사용은 절제해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좋은간판 디자인 원칙

1. 지나치게 크기가 큰 간판은 지양해 주세요.

간판은 크기가 크다고 주목성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간판을
만들어 주세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좋은간판 디자인 원칙

2. 간판 수량을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표기해주세요.

간판의 개수가 많다고 주목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만든 대표 간판 하나로 점포의 특성을 드러내 주세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좋은간판 디자인 원칙

3. 간결하고 특색있는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간결하고 특색있는 서체를 사용하여 점포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세요. 복잡하고 장식적인 서체는 가독성이 떨어져 시선을 분산시키지만, 세련되고 개성있는 서체는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좋은간판 디자인 원칙

4. 그래픽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여 정체성을 표현해 주세요.

적절한 그래픽은 문자보다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그래픽을 사용하여 점포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세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좋은간판 디자인 원칙

5. 강한 컬러 및 지나치게 다양한 색채의 사용은 절제해요.

두 가지 이상의 원색은 눈을 피로하게 하며 비호감을 형성합니다. 강한 컬러는 되도록 지양하며, 한 가지 정도 포인트로 적용하거나 무채색 또는 채도가 낮은 컬러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



간판의 일반적 표시 방법

[간판 허용 수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 위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1개 추가 가능한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도로의 굵은 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
-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규정을 초과하여 간판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나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간판 수량 산정 제외]

- 1면의 면적 0.36㎡이하,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 이하인 연립간판
- 건물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면적 1.2㎡ 이하의 간판
- 3층 이하의 유리 벽에 전체 면적 ¼이내로서 1㎡이내 도료, 천, 비닐, 테이프 등으로 표시한 표시 광고물

[표 시]

- 주표시: 주 표시내용은 업소명·상품명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표시
- 보조표시: 지점명,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 2가지 이내 표시 권장
-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 또는 오브제 형태의 표시 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

[색 상]

- 바탕색은 건축물 색상과 조화를 이루고,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 등 순도 높은 원색 사용금지. 강조색으로 일부 사용 가능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은 사용을 금지. 다만,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전광판으로 표시

유형별 가이드라인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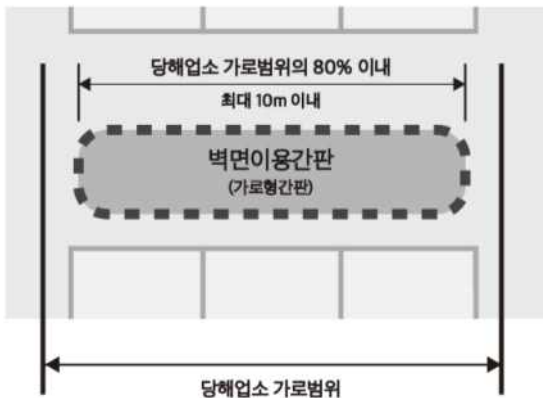
판이나 입체형으로 건물벽면,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 방법

- 1업소 1간판
(도로의 굵은 지점 ·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 가로크기 : 업소 가로폭의 80%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크기 : 판류형 1m 이내, 입체형 60cm 이내
-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 30cm이내
- 5층 이하 입체형 및 판류형 모두 설치 가능
- 벽면에 밀착시키고, 창문을 막지 않도록 설치

표시 방법



입체형간판



판류형간판

돌출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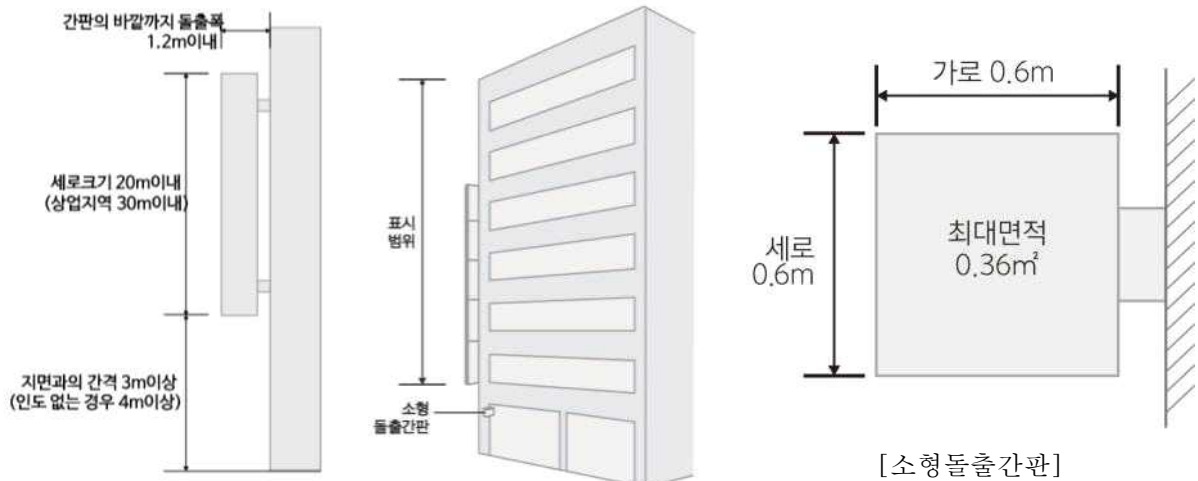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표시 방법

- 1업소 1간판
- 건물의 규모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
- 간판규격: 돌출폭 1.2m 이내, 세로 최대 20m 이내, 두께 50cm 이내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기는 소형 돌출간판으로 설치하고, 면적은 0.36㎡ 이내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지름 30cm, 세로 150cm이내, 벽면으로부터 50cm이내
- 소형 돌출간판: 1면적 0.36㎡이하,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수량 미포함)

표시 방법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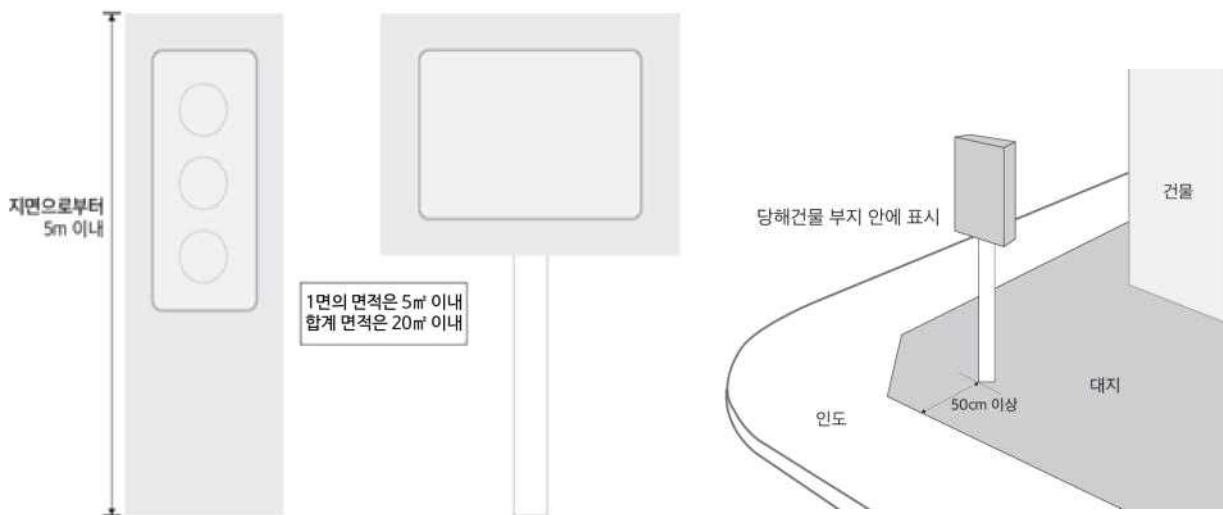


표시 방법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

- ❑ 도시지역은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1면의 면적은 10㎡ 이내, 합계 면적은 40㎡ 이내
-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선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1면의 면적은 5㎡ 이내, 합계 면적은 20㎡ 이내
- ❑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나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 추가 가능)
-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안쪽에 표시
- ❑ 허가: 높이 4m미터 이상, 신고 : 높이 4m 미만(지면~상단)

표시 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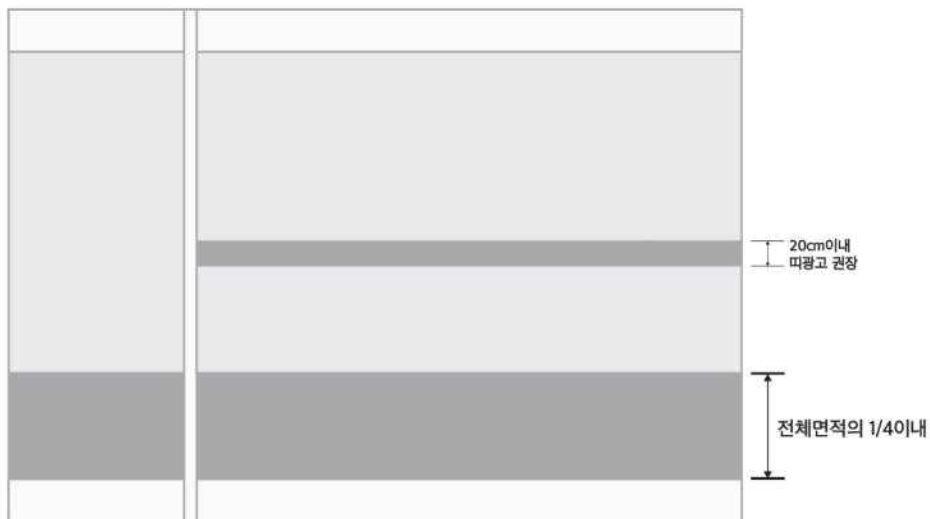
□ 설치 기준

- 판이나 입체형 제작·설치 표시 광고물: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은 1층)
-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 광고물: 3층 이하

□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1/4 이내로 최대 1m² 이내(폭 20cm 이하의 띠 형태 권장)

□ 건축물의 주 출입문 및 해당 업소의 출입문, 창문, 쇼윈도우에는 LED 전광판, 네온 사인 등 설치 지양

표시 방법



입간판

벽면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광고물



표시 방법

- ❑ 자사광고만 표시 가능하며 1개만 가능
-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 ❑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 불가)
- ❑ 영업 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 ❑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m² 이하, 합계 면적은 1.2m² 이하
- ❑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 이하

표시 방법

